
안전보건관리규정



2025. 10. 1.

서울특별시교육청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1
제4조(재해예방 의무)	2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2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2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2
제7조(관리감독자)	3
제8조(안전관리자의 선임)	3
제9조(보건관리자의 선임)	4
제10조(산업보건과의 선임 등)	4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4
제3장 안전보건교육	5
제12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5
제13조(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5
제14조(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5
제15조(채용 시 교육 등)	6
제16조(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6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6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6
제18조(방호조치 등)	6

제19조(안전작업 방법 작성 및 준수)	7
제20조(작업중지 및 보고)	7
제21조(안전보건순회점검)	7
제22조(안전보건표지등의 설치·부착)	8
제2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8

제5장 사업장 보건관리 **8**

제24조(건강진단)	8
제25조(작업환경측정)	8
제26조(보호구)	8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10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10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10**

제29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0
제30조(사고 원인조사)	10
제31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10

제7장 보칙 **10**

제32조(세부시행계획)	10
제33조(기록물의 보존)	10
제34조(규정의 개정 등)	11
제35조(기타 사항)	11

부칙 **11**

제1조(시행일)	11
----------------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2022. 9. 1. 제정
2024. 1. 1. 개정
2024. 4. 1. 개정
2025. 10. 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학교, 단설유치원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대표”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4. “안전보건주관부서”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주관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산업안전팀을 말한다.
5.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사업장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4조(재해예방 의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기준 마련

2.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하며, 교육감 및 관리 감독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① 안전보건관리 조직체제는 별도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는 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해당 작업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해당 작업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파악에 참여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관리자의 선임) 교육감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둔다.

1. 교육감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보좌
2.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도·조언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10. 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2.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보건관리자의 선임) 교육감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둔다.

1. 교육감 또는 관리책임자의 업무 보좌
2.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도·조언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4.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대한 보좌·지도
5.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1.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보건과의 선임 등)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사항의 업무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선임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과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시기와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총괄·관리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① 교육감은 근로자에게 매 반기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14조(관리감독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① 교육감은 관리감독자에게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5.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8.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9.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10.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2.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채용 시 교육 등) ① 교육감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 4 장 사업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 보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총괄·관리해야 한다.

1.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3.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18조(방호조치 등)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하여 성능검사 검정품인 방호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며, 방호장치를 유지·관리하도록 한다.

②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를 제거, 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방호장치 및 안전장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

용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안전작업 방법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 순서 및 주의사항이 기록된 안전작업 방법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안전보건주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해·위험요인이 있는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기계·설비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근로자는 안전작업 방법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작업중지 및 보고) ① 교육감 및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기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사고 위험 등을 보고 받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작업중지 사유와 조치내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관리감독자를 포함한 기관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노동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1조(안전보건순회점검) ①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장의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보건표지등의 설치·부착) ①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 등에 다음 각 호의 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② 1항에 따라 표지 등을 부착 할 경우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제23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교육감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이행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평가를 통해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사업장 보건관리

제24조(건강진단) 교육감은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제25조(작업환경측정) ① 교육감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18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26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제2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교육감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안내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장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활 화학제품 및 농약 등은 제외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보관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법 제 1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 표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① 교육감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질환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관리하고,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매3년마다 실시하고, 신설학교 및 기관 등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1년 이내 실시 후 매3년 마다 실시한다.

③ 교육감 및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실시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안전보건주관부서’에서 정한 지침·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제29조(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①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고 발생 시 최초 목격자나 발견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알리고, 관리감독자는 재해자의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중대재해(정의에 내용포함)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교육감 및 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중대재해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 또는 산업재해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교육감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사고 원인조사) ① 교육감은 산업안전 관련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조사 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 협조해야 한다.

제31조(재해발생현황 분석 및 대책 수립) 교육감은 매년 전년도에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발생원인 등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2조(세부시행계획)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라 정한다.

제33조(기록물의 보존) ① 교육감 및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기록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결과는 5년간 보존)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결과는 5년간 보존)
8.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9. 교육실시 관련 서류 및 확인서(위탁교육 시 교육 이수증)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34조(규정의 개정 등) ①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공문서 발송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기타 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부 칙(2022. 9.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시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시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0.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시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